

# 조례안 자구정리

-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4. 1. 18.)에서 원안가결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 정리하고자 함.

제 정 안	자 구 정 리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복지법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<u>보호자</u> 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보호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<u>보호자</u> (이하 “장애인 등”이라 한다)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보호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장애	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

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7조(추진사업)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민간위탁 및 지원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장애인등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----- 관련  
전문기관 등에 장애인등 -----.

③ (제정안과 같음)

제7조(추진사업) 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제정안과 같음)

3. ----- 장애인등 -----  
-----  
-----

제8조(민간위탁 및 지원) ①·② (제정안과 같음)

③ ----- 사무 -----  
----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-----.

제10조(표창) -----

의 정보접근권 제고와 정보격차  
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  
 월한 개인·단체 등에 표창할  
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 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  
례」를 따른다.

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  
례」에 -----.

			행정복지위원장
담당자	전문위원	사무국장	
박영은	김현희	조성국	